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19가합572314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조한직, 김윤석, 조경윤

피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현

담당변호사 김경준, 김의중, 신영식, 제강호

변론 종결2020. 10. 14.

판결 선고2020. 11. 11.

주 문

1. B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1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 주식회사에게 별지 채권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 24.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사이에 보증원금 900,000,000원, 보증기한 2022. 5. 23.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나. B은 2017. 6. 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C은행에 제출하고서 10억 원의 대출을 받았으나, 그 대출원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여 2019. 6. 16.경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9. 10. 8. C은행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898,200,706원을 대위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보증인과 연대보증인이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그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②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③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 대위변제일인 2019. 10. 8.부터 현재까지 위 약정 내용에 따라 '원고가 정하는 율'은 연 10%이다.

라. B은 2019. 4. 15. 피고와 B 소유의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9. 4. 17. 접수 제6618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D, E(중복)호로 진행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법원은 배당기일인 2020. 4. 23. 피고에게 근저당권자로서 64,797,514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그 배당표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원고가 B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당시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그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다. 한편,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2019. 2. 1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카단185호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청구금액 159,000,000원의 가압류등기를 마쳤고, 주식회사 F이 2019. 5. 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카단704호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청구금액 642,054,247원의 가압류등기를 마쳤으며, 중소기업은행이 2019. 5. 1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카단201483호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청구금액 64,502,109원의 가압류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B이 그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자 가압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B이 2019. 6. 16.경 C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여 원고의 사전구상권이 발생하였고, 이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과 불과 2개월 정도의 시간 간격이 있을 뿐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하게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이후 원고가 2019. 10. 8. 보증채무를 이행함에 따라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B의 무자력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당시 B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및 춘천시 G 외 8필지와 그 지상 상가(이하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H 주식회사와의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에 기한 수익권이 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920,000,000원이고,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가액은 21,338,000,000원이었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무렵 B의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894,465,674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680,000,000원, F에 대한 대출금채무 636,000,000원, I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7,430,000,000원, C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1,875,000,000원, 이 사건 신탁계약과 관련한 J조합, K조합, L조합, M조합, N조합에 대한 피담보채무 합계 9,130,855,949원, 피고에 대한 채무 500,000,000원 가량, O에 대한 채무 312,000,000원, 주식회사 P에 대한 채무 1,120,000,000원이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10, 12, 14호증, 을다 제4,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J조합장, I은행장, K조합장, L조합장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B의 2018년도 대차대조표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합계 31,728,722,553원이 계상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중 100억 원 이상은 매출채권, 미수금, 단기대여금채권, 감가상각이 상당 정도 진행된 유형자산인 점, B이 약 9억 원 정도의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를 일으킨바,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이들 자산의 실제 가치가 거의 없거나 단기 회수 또는 환가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점, B의 2019년도 대차대조표에는 자산 26,015,502,908원, 부채 31,406,674,302원, 결손금 17,106,960,450원이 계상되어 있는바, 전년도에 비하여 자산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부채와 결손금이 증가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2019년에 걸쳐 재무상태가 점차 악화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45364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가)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B로서는 그 당시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았다고 볼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금난에 처한 B이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가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가 그 신탁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한 가압류를 해제할 필요가 있었고, 피고가 B의 가압류 해제 요청에 응하는 대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는 채무 변제력을 갖게 하는 최선의 방법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 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사업의 계속 추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기존 채무를 아울러 피담보채무 범위에 포함시켰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25842 판결 참조).

갑 제11호증, 을다 제4, 9,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9. 2.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단80호로 B의 H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피고가 2019. 3. 8. 그 채권가압류 취하 및 집행해제를 신청한 사실, B이 2019. 6. 14. 주식회사 Q과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B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만 자금을 추가로 조달할 수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② B의 피고에 대한 기존 채무는 사업의 계속 추진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어 보이고, 가압류의 해제와 근저당권의 설정 간에 합리적인 등가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는 점, ③ 설령 B이 주식회사 Q과 새로운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추가 자금을 조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금이 B의 사업에 얼마나 투입되었는지, 또한 어떻게 지출되었는지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행위가 사업의 계속을 위한 부득이한 담보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당시에 B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 수 없었고,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을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에 관해서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가 2018. 10.경 B에게 물품을

공급하고도 그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9. 2. 12.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는바, 그 무렵 B의 재무상태를 어느 정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2019. 2. 19.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기도 하였는데, B의 신탁재산까지 알고 있었다는 것은 피고가 B의 자산상태를 비교적 상세하게 알고 있었음을 방증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한다. 이때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법원으로서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참조).

(2) B이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 법원이 배당기일인 2020. 4. 23. 피고에게 근저당권자로서 64,797,514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그 배당표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B에게 위 배당액에 해당하는 별지 채권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병철

판사정기상

판사선승혜

별지